

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수정조례안

본 조례안은 '98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
되어 동년 월 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음.

■ 제안사유

- 1998. 8. 17자로 제출한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이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별첨안과 같이 수정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있음.

■ 주요골자

- 제2조의 “기능”을 “사업”으로 하고 내용일부를 수정하여 3조로하고 제2조에 자원봉사활동 10개항의 범위를 신설하였음.
- 제3조 “사무위탁”을 삭제하고 제6조 “운영”사항을 명문화 하였음.
- 제5조 “보조금”을 삭제하고 제7조로하여 내용일부를 수정하였음.
- 제7조 “회계년도”을 삭제 하였음.
- 제8조 “사업계획 및 예산”을 삭제하고 제3조로하여 일부 수정하였음.
- 제14조 자원봉사 등록 및 배치조항 신설
- 제15조 자원봉사자의 활동조항 신설
- 제16조 증서교부 및 포상조항 신설
- 원안 제13조 부칙을 수정조례안을 제17조 부칙으로 수정하였음.

■ 검토의견

- 자원봉사 활동은 민간부문에 있어 종교단체, 민간단체, 개인 등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활동이 체계적으로 미흡하고 활동 영역에 있어서 다양화 해야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.
- 자원봉사 활동은 행정이 담당할 주민생활의 복지문제 등에 민간부문에 여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, 사회, 가정에 큰 기여를한다고 봄.
- 조례안 제2조에 자원봉사활동 범위 10개항을 신설하였으며, 제4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을 심의토록 하고, 제6조의 운영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위탁시 위탁자의 능력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변경하고, 제14조 신설안은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며 제15조 및 제16조 신설안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수칙,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인정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문제는 사업계획서와 프로그램이 세부적 작성되어 운영의 전문성과 사업비용, 효과성 등을 비교 검토후 추진해야 할것임.
-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이 민간부문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민간단체, 개인이 불우이웃돕기나 청소외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제도적 뒷받침을하여, 앞으로 보다 많은 단체 개인등이 참여 사회에 기여하고,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의 창구역할이 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.